

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3의2] <신설 2021. 1. 7.>

해양자율방제대의 시설 및 방제자재 기준(제35조의2제1항 관련)

1. 시설 기준

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추는 것

가. 비·바람 등으로부터 방제자재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물

나. 방제자재의 변질 또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환기장치 및 쥐에 의한 피해예방장치

다. 방제자재 반출에 지장이 없는 반출통로

2. 방제자재 기준

다음 각 목의 방제자재를 모두 갖추거나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방제자재를 사용할 수 있을 것

가. 오일펜스 40m 이상

나. 유흡착재 30kg 이상

다. 개인보호장구세트 10세트 이상

라. 일회용 작업복 및 장갑 20벌 이상